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02. 2. 15.

개정 2007. 11. 5.

2012. 5. 10.

개정 2020. 9. 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발전적인 조직 운영 및 학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부학장, 학생부학장, 연구부학장, 기획전략본부장, 행정실장과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학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학장, 부위원장은 기획전략본부장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칙,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
2. 학부 또는 학과(전공 포함)의 설치 및 폐지
3.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·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 연구에 관한 중장기 대학발전계획
5. 주요 시설사업과 시설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
7. 기타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행정실 주무자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③ (삭제)

부칙(제42호, 2002.2.15.)

1.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기획위원회규정 및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교과과정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(제78호, 2007.11.5.)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96호, 2012.5.10.)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43호, 2020.9.4.)

이 규정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